

의안번호	2202107
의 퇴 인	서천호의원
회 답 일	2024. 8. 12.
추계번호	24B2250
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억 4,000만원(연평균 5억 2,800만원)으로 추계됨

- (국 비) 5년간 총 13억 2,000만원(연평균 2억 6,400만원)
- (지방비) 5년간 총 13억 2,000만원(연평균 2억 6,400만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안 제6조제2항(농어촌 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	528	528	528	528	528	2,640	528
－ 국비	264	264	264	264	264	1,320	264
－ 지방비	264	264	264	264	264	1,320	264

주: 지원경비의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2항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추계여부
1	안 제6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 제2항	○	<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 지원> •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현행법 제6조제2항¹⁾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(농림축산식품부)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(道)별 체험휴양

1) 법 제6조(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농어촌의 자연환경, 영농·영어(營漁)활동,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·휴양자원의 개발
2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
3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
4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
5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
6.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·연구
7. 그 밖에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마을협회의 인력운영 비용을 지원하였으며, 2024년 폐지됨

* 9개 道 협의회(회장 9명, 직원 19명), 1개 전국 협의회(회장 1명, 직원 2명)²⁾

- **(해양수산부)** 해양수산부는 ‘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’을 추진중으로, 2023년도 예산은 24억 8,900만원, 2024년도 예산은 8억원 규모

－ **(목적)** 안내소, 체험장,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·개선으로 체험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

※ 해양수산부에는 2024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

[표 2]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예산지원 현황: 2021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소관	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2021	2022	2023	2024
농림축산 식품부	농촌관광활성화 (4170-301) ¹⁾	농촌관광주체지원 ²⁾ (사무장활동비 지원) (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지원액(국비))	252	264	277	— (폐지)
해양수산부	어촌소멸대응지원 (3347-300) 중	어촌자생력강화 (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 화 사업)	2,006	2,006	2,489	800

주: 1) 2020~2022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-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(내역사업)에서 지원하였으며, 2023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-농촌관광활성화(세부사업)의 농촌관광주체지원(내역사업)으로 지원

2) 국비 지원(50%) 기준으로 지자체 별도 지원은 미포함

자료: 1.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4.1.

2. 해양수산부,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4.1.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2023년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를 추계함
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('21~'23년)간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(1개소)와 도(道)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(9개소) 대상 지원 인원 수는 21명
- － 체험휴양마을협의회(총 10개소) 지원사업 비용으로 최근 3년('21~'23년)간 평균 국비 264백만원 편성

2) (전국 협의회) 2명, 국비 100% / (도별 협의회) 2~3명, 국비 50% + 지방비 50% / 회장은 명예직
－ 지원기준: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(2023년 201만원 기준) 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)

-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함
 - (지원대상 단체 수, 인원수) 매년 10개소(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 1개소,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9개소), 21명
 - (지원금액) 연간 264백만원(국비 기준)
 - 이때, 추계기간 동안 지원금액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) 50 : 50
 - 단, 전국 협의회 2명도 국비 50%로 가정
- 추계 결과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관련 단체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6억 4,000만원으로 추계됨
 - (국 비) 5년간 총 13억 2,000만원
 - (지방비) 5년간 총 13억 2,000만원

[표 3]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개소, 명, 백만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원경비		528	528	528	528	528	2,640
	- 국비(50%)	264	264	264	264	264	1,320
	- 지방비(50%)	264	264	264	264	264	1,320

주: 지원경비의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:50으로 가정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은 재량지출성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직무대리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박인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